

##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145
----------	-----

위원회 회부일 : 2003. 11. 24.

제안이유

- 도시개발사업소 한시정원 9명은 2001년 2월 10일 조례 제2077호로 제정되어, 200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정원임.
-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같이 당초 한시정원 9명과 자체정원 14명을 한시정원 3명과 6급이하 정원 20명은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토록 승인되고, 존속시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한시정원의 시한을 연장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도시개발사업소 정원 : 23명(한시 3명, 자체 20명)
  - 한시정원 : 3명[행정·시설4급 1, 행정5급 1, 토목5급 1]
  - 자체정원 : 20명 [행정6급 2, 행정·지적·토목6급 1, 토목·건축6급 1, 행정7급 3, 지적7급 1, 토목7급 2, 토목·건축7급 1, 행정8급 3, 토목8급 1, 지적8급 1, 행정9급 1, 기능직 3(필기8급 1, 전산9급 1, 운전 9급 1)]
- 연장승인사항
  - 한시정원 존속기한 : 2006. 12. 31까지(3년간)

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2003. 12. 31까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로 설치된 목포시도시개발사업소의 한시기구와 함께 승인된 한시정원을 한시기구가 연장승인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한시정원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
- 목포시도시개발사업소의 정원은 당초 한시정원 9명과 자체정원 14명 등 23명으로 구성되었으나 금번 5급이상 3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되고 6급이하 정원 20명은 목포시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하도록 정원 승인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.